



문서번호 : 21-04-베트남TF-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담당: 임재성 변호사 (010-4748-0807), 김남주 변호사 (010-8997-3653))
[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제 목 :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1. 04. 08.(목)

전송매수 : 총 43매

[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 2021. 4. 9.(금)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민변베트남TF'라고 함)는 2017년부터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이라고 함)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여왔습니다. 대법원은 2021. 3. 11. 국정원의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하였고, 이 판결에 따라 2021. 4. 5. 민변베트남TF 소속 임재성 변호사(소송 원고)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민변베트남TF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 정보를 공개하고,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추가 공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민변베트남TF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정보는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최영언 중위, 이상우 중위, 김기동 중위를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입니다. 위 3인은 각 1968. 2.경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1·2·3소대장인데,

2000년경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1969년경 풍니·풍넛 사건¹⁾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정보공개청구 이전까지 국가정보원은 포함한 한국 정부는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가 확인된 것입니다.

3. 기자회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과 및 정보공개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민변베트남TF 간사)

2) 국정원 상대 추가 정보공개 요구

김남주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민변베트남TF 팀장)

3) 풍니·풍넛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정보공개에 대한 소감

석미화 사무처장 (한베평화재단)

별첨

- 국정원 상대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각 판결문(총 5개)

2021년 4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1) 풍니·풍넛 사건이란 1968. 2. 12.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한국군인들이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Đà Nẵng)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5km 지점에 있는 풍니(Phong Nhi) 마을에서 최소한 약 70명 정도의 민간인을 집단적으로 살인한 사건입니다. 풍니(Phong Nhi) 마을 주민들은 사건 직후부터 한국군의 책임을 요구하며 여러 기관에 탄원을 하였고, 그 중 1969. 2. 남베트남공화국 하원의장에게 보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디엔반현 인근에 주둔 하던 한국군이 갑자기 우리 마을에 들어닥쳐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잡아다 칼로 찢러 죽였고 너무도 잔인하게도 그들은 우리 가족·친지들의 손과 발을 토막 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4천 년의 문명을 지닌 67명의 베트남인들이 일개 곤충 취급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풍니·풍넛 사건 피해자들은 2019년 4월경 청와대에 진상조사 청원을 하였으며, 풍니·풍넛 사건의 피해자 응우옌티탄은 2020년 4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위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 중).



음성출력용바

2018. 07. 31

서울 행정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836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임재성

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안지희

피 고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윤중, 이재형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 문

1. 원고의 소 증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8. 16.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음성출력용바코드

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민변 TF'라 한다) 및 재단법인 '한베 평화재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민변 TF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 및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피조사자로 하여 1968. 2. 12. 베트남 중부 팡남성 소재 풍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관한 사건(이하 '풍니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조사하였다'면서 이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하고, 이 사건 제1정보와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다. 피고는 2017. 8. 16.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1969년 당시 이 사건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음성출력용바코드

다.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하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풍니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1972. 8. 14.경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기 위하여 촬영하였고 그 목록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위 촬영 목록은 중앙정보부가 조사 당시인 1969. 11.경 작성한 문서의 목록은 아니지만 해당 문서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국민 개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지배영역에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표목이나 작성 매체를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 국정참여권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 주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공개대상정보를 정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개대상정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마이크로필름 촬영 목록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제1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정보는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정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정보는 풍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으로서 그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풍니 사건과 관련하여 1969년경 보고서 등 문서들이 실제 작성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당시 중앙정보부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의 법률적 근거와 성격, 조사 자료를 보고서 등 서류





음성출력용바코드

로 작성·보관할 의무의 존부 등이 분명치 않은 점, ② 실제 위와 같은 보고서 등 작성 서류를 인용하거나 그 작성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비록 피고가 최초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제2정보의 부존재'를 처분사유로 들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고 소속 담당자가 '문서들의 목록'이 아닌 '문서 그 자체'를 공개대상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제2정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풍니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 등 문서들이 실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중앙정보부가 당시 시행 중이던 공문서보관·보존규정 등에 따라 공문서의 목록 등을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작성된 문서들로부터 그 목록을 추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고서 등 문서 자체의 작성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점을 전제로 그에 대한 목록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제2정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정보의 존재 여부는 처분사유 이전에 소의 적법 요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고로서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의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





음성출력용바코드

지 않고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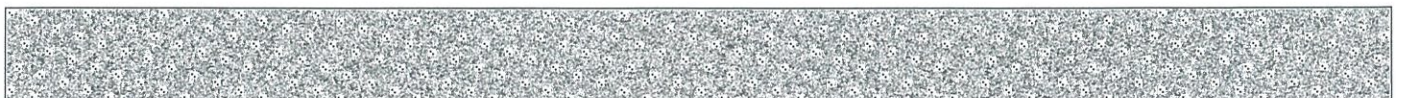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 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2호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공개청구권자의 구체적 이익 등과





행정청이 공개 거부 사유로 드는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정보는 풍니 사건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그 목록에 불과하므로 풍니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직접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점, ② 풍니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미군들에 대한 조사내용과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이미 공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사이에 현재 풍니 사건 등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문제가 외교 이슈로 부각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베트남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등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정보의 공개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협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제1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1969년경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풍니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는지 여부와 그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이 사건 제1정보는 약 5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사료(史料)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원고는 민변 TF 소속 변호사로서 이 사건 제1정보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의 존부에 대한 규명 등 소속단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기본적으로 외교관계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문제로서 시민단체의 어떠한 행위가 외교문제로 직접 비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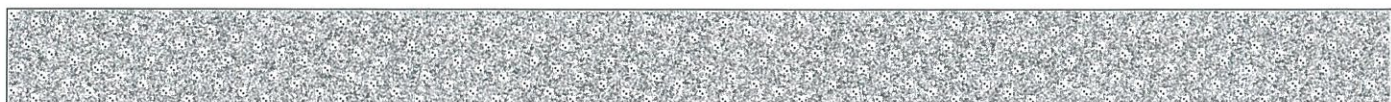
음성출력공백

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등 구체적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사건 제1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분명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u>김용철</u>	
	판사	이현정	<u>이현정</u>	
	판사	강민기	<u>강민기</u>	





음성출력용바

별지 1

목 록

1.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2. 중앙정보부가 1969.경 풍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



별지 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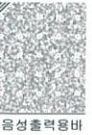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끝.



음성출력용바

정본입니다.

2018. 7. 31.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정승자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출력용바

서울고등법원

제 7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8누602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임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안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피고, 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8361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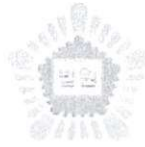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추후 이 사건 제1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으





음성출력용바코드

로 보이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 내에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어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의 행위에 대한 사과 및 배상요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제1정보가 공개되면 이 사건 제1정보에서 언급된 3명과 갑 제3호증에서 언급된 1명 등 4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므로 공개를 위해서는 이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원고가 이러한 동의가 있었음을 밝히지 않은 이상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사유 존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대상정보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외교 분야의 특성상 이 사건 제1정보의 공개로 인한 외교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적시할 수 없는 한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더라도,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가능성이거나 일반적 추론만으로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1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요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이 사건 제1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음성출력용버드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비공개 가능 여부

피고는 제3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사전 동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의 전제 사실 및 적용 법조와도 다르다.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사유 외에도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 사건 처분의 비공개사유로 추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와 입법 취지 및 요건 등이 다르므로,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위반 사실과 당초의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음성출력용바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u>김우진</u>	
	판사	박순영	<u>박순영</u>	
	판사	이정환	<u>이정환</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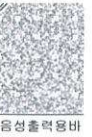


음성출력용바

별지

목록

1.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 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2. 중앙정보부가 1969년경 풍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



음성출력용바

정본입니다.

2018. 11. 29.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태석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행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9356 정보공개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임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피 고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현경, 이동훈

변 론 종 결 2019. 12. 6.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의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 및 '재단법인 한베 평화재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위 태스크포스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 및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피조사자로 하여 1968. 2. 12. 베트남 중부 팡남성 소재 풍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관한 사건(이하 '풍니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조사하였다"면서 이에 관

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제1 정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제2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614호(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7. 27. "피고가 이 사건 제2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 처분 중 이 사건 제2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제1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 처분 중 이 사건 제1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위 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이 사건 제1 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2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1. 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즈음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적극적 처분의무가 있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피고도 알고 있던 사유를 내세워 처분 시기만 달리하여 재차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실질적으로 기속력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제1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고 피고 또한 알고 있던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제1 정보에 피조사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¹⁾이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

는 것에 불과하여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성명이 비공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쉽게 분리하여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정보 전부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선행 처분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즉, 피고는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제1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외교적 논란이 발생하여 국익에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공개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제3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무마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1)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 482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은 이 사건 제1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 처분 중 이 사건 제1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1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는바, 이 사건 제1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규정하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명백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선행 처분 이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이 사건 선행 처

분 또는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잠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권한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행 처분과 정보비공개 사유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선행 처분을 단순히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제1 정보 중 성명 등 일부를 공개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제1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외교적 논란이 발생해 국익에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형식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을 조

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의 목록(이 사건 제1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는데, 위 피조사자들은 2000년경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1969년에 중앙정보부에서 풍니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및 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를 밝혔던바, 이 사건 제1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위 피조사자들의 이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는 위 피조사자들이 그 공개에 동의한 것에 해당하여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제1 정보 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정보는 피조사자들의 성명(최영언, 이상우, 김기동²⁾) 및 위 각 피조사자들의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 위 각 피조사자들의 출생지 또는 본적지로 추정되는 지역

2) 이기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기동'의 오키로 보인다.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정보 중 피조사자들의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에 해당하는 정보는 위 피조사자들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제1 정보 중 피조사자들의 성명은 원고가 이를 특정하여 공개를 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갑 제5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5. 4. 발간된 한겨레21 잡지에서 위 피조사자들의 성명이 특정되어 풍니 사건에 관하여 위 피조사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이미 공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조사자들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위 피조사자들의 출생지 또는 본적지로 추정되는 지역명은 구체적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지역명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혹은 피조사자들의 성명과 결합하여 보더라도 그것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정보 중 피조사자들의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의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u>박형순</u> 
	판사	김우진	<u>김우진</u> 
	판사	이디모데	<u>이디모데</u> 

열람공공

별지 1

목록

1.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 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2. 중앙정보부가 1969.경 풍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 끝.

열람용

별지 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끝.

열람용

서울고등법원

제 4-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20누35563 정보공개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임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피고, 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현경, 이동훈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선고 2019구합5935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하단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 정보 중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통해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이 풍니 사건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과 이들이 풍니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를 통

해 위 피조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정보는 조사 문서의 목록과 위 피조사자들의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가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이루고 있어 일부만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정보 전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제3자로부터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듣고 정보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법원 또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기 전에 대상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동의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정보와 관련된 피조사자들이 정보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정보 중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부 공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

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정보 중 관련 피조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에 관한 정보를 제외 내지 삭제하고 피조사자들의 성명과 조사일시 등이 기록된 나머지 목록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풍니 사건에 관하여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는지 여부 등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개할 가치도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제1 정보와 관련된 피조사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일부 공개된 정보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인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는 이상, 그 나머지만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 정보 중 생년월일과 출생년도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관련된 피조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제1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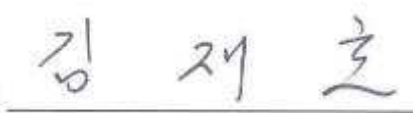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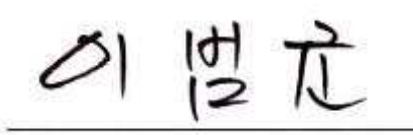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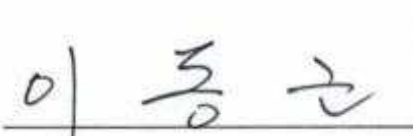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정보공개법의 관련 규정에다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한 제3자의 의견 청취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행하는 임의 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보 공개 거부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정보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점, ③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 제3자의 공개 거부 의사 표시는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로부터 사전에 정보 공개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로 제3자 관련 정보의 정보공개결정 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게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정보에 대하여 처음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때는 2017. 8. 2.경인데,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 후로도 위 정보공개법상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관련 피조사자들에게 소송고지를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정보에 관하여 위 정보공개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 등 그 책임을 해태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이범균		
	판사	이동근		

정본입니다.

2020. 10. 14.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황현관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54647 정보공개거부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임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국가정보원장

피고, 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김현경

서울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35563 판결

원 심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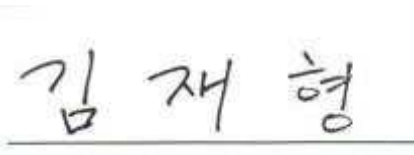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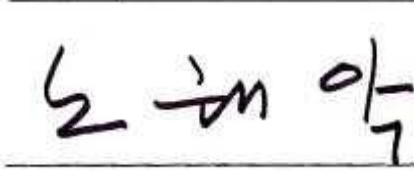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약	 

정본입니다.

2021. 3. 11.

대법원

법원사무관 최은경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